

은평구 공고 제 2024-909호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폐문 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인



- 공 고 명 :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내 용 : 2022년 식품위생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납부 독촉고지
- 공고기간 : 2024. 5. 2(목).~ 2024. 5. 17 (15일)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 101조
- 공고대상 : 임*수 외 6명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위생과 (02-351-8180)
- 고지사항

가. 위 당사자는 공시송달(공고) 기간까지 은평구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체납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72%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시송달 공고 기간이 경과 되면 반송된 과태료 고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대상

| 번호 | 대상자 | 주소 | 상세주소 | 배달결과 |
|----|-----|-------------------------|------------------|------|
| 1 | 임*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다길 1-5 | (신사동) | 폐문부재 |
| 2 | 윤*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87-1 | 지하1층 (녹번동, 이화빌딩) | 폐문부재 |
| 3 | 최*련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33-13 | 1층102호 (구산동) | 폐문부재 |
| 4 | 김*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61 | 지하1층 (응암동) | 폐문부재 |
| 5 | 정*숙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7길 20-18 | 302호 (녹번동, 수채화) | 폐문부재 |
| 6 | 박*현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7길 7 | 지층 (대조동) | 폐문부재 |
| 7 | 함*경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7길 21 | (갈현동) | 폐문부재 |

끝.